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95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김남희 · 전용기 · 이수진
박희승 · 이학영 · 오세희
김기표 · 이정문 · 민병덕
전진숙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법률 제 호

사회보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회보장, 지역복지(「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 나. (생 략) <u>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라. (생 략) ④ ~ ⑨ (생 략)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사회보장, 지역복지(「지 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 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 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라.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